

2020년도 제8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5. 28.(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최승수,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82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61건(안건번호 제2020-32780호~3473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32780호는 네이버 블로거가 직접 링크 (direct link)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2781호는 네이버 블로거가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과 자막 파일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2782호~32784호는 네이버 블로거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우리말 더빙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2785호~32841호는 밴드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임.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밴드에서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동일한 복제·전송자가 복수의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점, 누구나 게시물을 볼 수 있거나 회원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어 해당 밴드의 폐쇄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

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32842호~3287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34737호~34738호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하여 심의요청된 것으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3,15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68건(안전번호 제2020-2287호~2354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68개 안전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8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8개 안전(8개 안전은 부결 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8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8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6쪽의 카페명, 제품명, 실연자명, 저작물명, 7쪽의 저작물명, 게시판명, 8쪽의 실연자명, 저작물명, 민원인 신고 내용, 게시판명, 9쪽의 OSP명, 13쪽의 카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저작자명,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17쪽의 저작물명, 방송사명, 게시물 내용, 18쪽의 저작물명, 19쪽의 저작물명, 방송사명, 20쪽의 밴드명, 21쪽의 밴드명, 저작물명, 밴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22쪽의 밴드명, 저작물명, OSP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이므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C, B, D 위원: 해당 내용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카페명, 제품명, 실연자명,

저작물명, 게시판명, 민원인 신고 내용, OSP명, 카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저작자명, 게시물 내용, 방송사명, 밴드명, 밴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월트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픽처스', '20세기폭스', '미국ABC', '넷플릭스', '일본 후지TV', 'tvN', '어도비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소송대리 내지 보호활동, 조정,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D, A, C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32780호~34738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3,261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2780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 '※※※(※※※※※※)'가 블로그 '※※※※ ※※※※'를 운영하면서 영화 '※※※※※※※※ ※※ ※※ ※'를 6개의 직접 링크로 나누어 제공한 사안임.

민원인은 "※※※ ※※※ ※※※※※ ※※※ ※※ ※※ ※※※ ※

※※※※ ※※※※ ※※※ ※※※ ※※※※※ ※※※※ ※※※※.”

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여 각 영상물을 재생하면서) 직접 링크 설정되어 있는 6개 영상물은 각각 19분 14초, 26분 08초, 21분 31초, 28분 34초, 20분 38초, 14분 24초 길이임. 모두 우리말 자막을 포함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포스터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 ※※※※※ ※※※※ ※※※※※ ※※※※※” 등의 댓글이 달려 있고, 공감 수는 33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3278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영화 한 편 전체를 6개의 링크로 나누어 제공 중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영화 한 편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주소에 ‘embedded’가 포함되어 있음. 직접 링크인지 아니면 임베디드 링크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링크 클릭 시 카카오 TV 플레이어로 연결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직접 링크(direct link)로 보아야 함.
하급심 법원은 링크행위에 대하여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링크설정 행위가 민사적인 의미에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되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링크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3278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32780호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영상물을 직접 링크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
- C 위원: 시정권고를 가결함.
- B 위원: 같은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278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2781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 ‘※※※※’이 “※※ ※※ ※※(※※※※※※ ※※※※, ※※※※) ※※ ※※※※”라는 제목으로 일본 영화 ‘※※ ※※’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과 smi 자막 파일을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포스터 1개, 일러스트 1개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영화 ‘※※

※※’는 일본 ‘※※※※※’사가 제작하고, ‘※※※ ※※※’가 감독을 맡은 오리지널 극장용 애니메이션임. 2009. 8. 1. 일본에서 개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 8. 13. 정식 개봉함. 심의대상 게시물에 첨부된 토렌트 파일을 통해 다운받아진 영상물은 영문 자막과 함께 제공되고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3278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smi 자막파일을 다운받아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재생 프로그램에 자막파일을 적용했지만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음. 사무처가 smi 자막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 후 확인한 결과, 우리말 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면서)smi 자막 파일의 이름은 ‘※※※※※.※※※※.※※※※.※※※※※.※※※※※※※.※※※※.※※※※’임. ‘※※※※※※※’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 저작물에서 추출한 자막파일임. 불법복제물의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해 주는 토렌트 마그넷 주소 또는 토렌트 파일의 제공은 저작권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A 위원: 시정권고를 가결함.
- B 위원: 가결 의견임.

-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278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2782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 ▼▼▼▼(▼▼▼▼▼▼▼▼)' 1기 1화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우리말 더빙과 함께 제공 중인 사안임. 애니메이션 '▼▼▼▼ ▼▼▼▼'는 2007. 10. 6.부터 2008. 9. 27.까지 ▼▼ ▼▼▼▼에서, 2008. 8. 11.부터 2008. 9. 24.까지 우리나라 ▼▼▼▼에서 방영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우리말 더빙판을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 ▼▼▼▼ 방영본과 같은 영상물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실제 방영본과 동일한 영상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2783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1화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우리말 더빙과 함께 제공 중인 사안임. '▼▼ ▼▼ ▼'은 2005. 7. 2.부터 2006. 6. 24.까지 ▼▼▼▼에서, 2006. 8. 21.부터 2006. 11. 15.까지 우리나라 ▼▼▼▼에서 방영되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2784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

이션 '▼▼▼▼(▼▼▼)' 1기 22화를 유튜브와 네이버 TV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우리말 더빙과 함께 제공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임베디드 링크된 유튜브 영상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중 네이버 TV를 중심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참고로 '▼▼▼▼'는 2000. 10. 16.부터 2004. 9. 13.까지 ▼▼ ▼▼에서, 2002.부터 2006.까지 우리나라 ▼▼▼▼에서 방영되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32782호~3278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우리말 더빙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D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A, B 위원: 가결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2782호~3278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2785호~3284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58개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네이버 밴드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니지만, 회원 수가 10명 이내에 불과한 소규모 밴드에서의 비상시적인 콘텐츠 공유까지 차단조치를 취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음.

- B 위원: 폐쇄형 밴드는 기존의 회원의 초대가 있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함. 이러한 폐쇄형 밴드를 보호원이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대규모 폐쇄형 밴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방지할 수 없을 텐데 폐쇄형 밴드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폐쇄형 밴드는 회원 가입에 제한이 있어 보호원이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이 되는 밴드들은 네이버 밴드에 '영화'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오는 개방형 밴드임.
- B 위원: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폐쇄형 밴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폐쇄형 밴드는 검색 자체가 안 되는데, 폐쇄형 밴드 내 게시물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민원인 신고가 있으면 조사가 이루어 짐.
- C 위원: 네이버 밴드 개설 시 공개가 기본 설정임. 개설 초기에 공개형 밴드였다가 폐쇄형 밴드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음. 공개형 밴드였을 때의 게시물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검색결과에 노출된 것일 수 있음.

- A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호원이 네이버 밴드 영화 게시물을 자체 조사했다고 되어 있음. 보호원은 밴드 게시물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밴드에 '영화'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여 보여주면서)밴드는 '네이버', '구글' 등 통합검색플랫폼과 같음. 검색창에 영화 제목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게시물이 검색됨.
- A 위원: 그렇다면 회원 수의 적고 많음은 시정권고의 중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함. 보호원 직원이 밴드 내 게시물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때 게시물을 클릭하거나 캡처함에 있어 회원 수는 중요하지 않음. 행정인력의 배분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C 위원: 소규모 밴드가 아닌 대규모 밴드가 주된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야 함.
- A 위원: 소규모 밴드의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현순 사무처장: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는 규제가 아닌 예방에 있음. 위반행위를 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음. 형사처벌, 손해배상이 아닌 시정 조치를 권고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소규모 밴드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결한다면 향후 저작권 침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 A 위원: 저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

정권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주된 역할임.

- B 위원: 대표적으로 ‘▼▼▼’ 사건에서 ▼▼▼▼▼▼▼▼▼▼의 부당한 권리행사가 문제된 바 있음. 과도한 권리행사로 몇 달간 소송이 진행되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삭제를 요청한 ▼▼▼▼▼▼▼▼▼▼와 삭제하고 재게재를 거부한 ▼▼▼▼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 배상액을 20만 원으로 제한했으며, OSP 측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음.
- A 위원: 음원 전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이가 따라 불렀던 동영상에 대해 ▼▼▼▼▼▼▼▼▼▼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OSP에 게시 중단 요청하여 소송까지 제기된 사건임.
- C 위원: 원래 곡 사용료가 낮음.
- B 위원: 원고는 동영상을 재게해 줄 것을 ▼▼▼▼에게 요청했지만 저작권법에서 명시한 소명자료의 부족으로 ▼▼▼▼는 해당 요구를 거절함.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까지 신탁단체나 저작권자가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데, 해당 사건에서 법

원은 영리 목적이 없으면서 오히려 해당 가요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 B 위원: 현행 저작권법은 게시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문제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인데, 관련 시행령은 이를 위해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해당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행 법규상 이용자가 공정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에 의해 부당하게 삭제 요청을 받더라도 이에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임.

미국 DMCA는 저작권자는 OSP에게 일정한 사항을 소명하여 UCC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OSP에게 일정한 사항을 소명하여 이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이용자가 공정이용임을 소명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공정이용법리에 따라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인데, 결국 ▼▼▼▼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사안임.

- 성원영 위원: 미국의 'Lenz 사건'과 유사함. 미국 법원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권리자의 OSP에 대한 삭제통지의 위법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A 위원: ▼▼▼▼▼▼▼▼▼▼는 비영리단체, 복지기관 등이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사용료 징수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의 notice and takedown process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함.
- B 위원: 관리자-이용자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OSP가 통보와 삭제 조치를 판단하면 문제가 됨. 관리자나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해 OSP는 수동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 OSP가 자체적 판단으로 저작물을 삭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음.
- A 위원: 이용자의 공정이용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정이용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음.
- D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시정권고 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OSP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B 위원: 동의함.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개방형 밴드인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A 위원: 밴드 가입만 하면 게시물을 볼 수 있어 보호원 직원이 불법 복제물 전송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시정권고를 가결함.

- D 위원: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저는 지난 심의에서의 입장과 같이 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32785호~32841호는 3인의 위원이 가결, 1인의 위원이 부결 의견이므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2842호~3287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총 46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어도비(Adobe Systems)사의 'Photoshop',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Office'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주요 관리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트라이얼 버전 혹은 라이선스 인증 프로그램 제공 여부는 각주 9번의 각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심의대상 게시물은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크래킹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 즉 접근통제조치 무력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 크래킹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를 이용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복제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일어남. 크래킹 프로그램은 '기술

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라이선스 키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32842호~3287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 또는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시정권고를 가결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함께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D 위원: 해당 안건들은 소프트웨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2842호~3287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2880호~34738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하신 심의대상 게시물 중 일부를 설명하겠음.

(음악 'Happy'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2931호는 2020. 5. 4. 발매된 음악을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게시자는 '지니 2020년 05월 21일 실시간 TOP 100 [23시 기준][320k]'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0곡 이용 가능함.

(게임 '드래곤볼 Z 카카로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3030호는 2020. 1. 16. 발매된 게임을 웹하드에서 1,2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배급사는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임. 정품 판매가는 약 65,000원임.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4213호는 2020. 6. 17. 개봉 예정인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35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제작사는 '월트 디즈니 픽처스'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며, 국내 배급사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임. 우리말 자막을 포함한 영상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4283호는 tvN에서 방영중인 방송 프로그램 8회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9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4341호는 1993. 12. 24. 개봉하여, 2020. 5. 1. 재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2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최근 재개봉하여 민원인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음. 게시자는 mkv 영상파일과 smi 자

막파일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만화 '카게노도 청춘이고 싶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4725호는 2017. 6. 25. 출간되어 총 11권 완결된 만화를 웹하드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키타가와 유카] 카게노도 청춘이고 싶다 10' 압축 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단권 판매가는 약 4,500원, e북 단권 판매가는 약 3,000원임.

(안전 목록표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2737호는 안전번호 제 2020-34735호와, 안전번호 제2020-34738호는 안전번호 제2020-34736호와 동일한 사안임.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하여 심의요청된 것이므로 후속 심의요청된 건인 안전번호 제2020-32737호~32738호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33880~3473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2020-34737호~347378호는 중복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이 타당함. 나머지 안전들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동의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중복요청된 2건은 부결함. 나머지 3,150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은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시정권고를 가결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2880호~3473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34737호~347378호는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게시물이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34737호~3473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32780호~3473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23쪽부터 3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287호~2354호는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

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정 없이 총 68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8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8개 안건(8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을 부결함.

4. 폐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8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8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5.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정인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